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4. 5.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건강증진과]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건강증진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 변경하여 출산율 제고와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제2호는 출산축하금의 정의를 셋째자녀 이상에서 둘째자녀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안 제 4조제1항 및 제2항은 출생 순위별 명시된 지원금액 및 분할 지급내역을 삭제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의 지급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는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에서 유사 목적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1일부터 2024년 5월 2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1건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 안 제9조(대장 비치)의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에 대상자의 생년월일 만 표기되어 성별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을 주민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 2024년 5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은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축하금으로 둘째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년도 비용은 300백만원(600명×50만원) 산출하였고 출생아 수 유지를 목표로 하여 5차 년도까지 지출 총액 1,500백만원 정도로 추계되어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환경에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4065
----------	----------

제출년월일: 2024. 5. 30.  
제출자: 달서구청장  
(건강증진과장)

## 1. 제안이유

-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 변경하여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문을 정비함

## 2. 주요내용

### 가. 출산축하금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 확대

### 나. 지원기준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출생 순위별 명시된 지원금액 및 분할 지급내역을 삭제함
-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의 지급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다. 지원대상 조정(안 제10조)

-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에서 유사 목적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0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3)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본예산 편성예정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4. 4. 11.~5. 2.) 결과: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1건 접수

#### ○ 의견 접수에 대한 반영 결과

- 조례안의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에 성별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을 주민번호로 변경하고자 함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출생아의 순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지급방법은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원금의 조정)”을 “(지원대상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대구 달서구 자체 접부	해외출생(해당 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 등재일 :				
	대구시 출산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첫째 자녀(이름 : )		<input type="checkbox"/> 둘째 자녀(이름 : )		
	달서구 출산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셋째 자녀(이름 : )		<input type="checkbox"/> 넷째 자녀(이름 : )		
		<input type="checkbox"/>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                      생년월일 :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멤버십 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 BC카드(                      은행)                      [ ] 삼성카드                      [ ] KB국민카드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 표를 하고, <b>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b>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b>신청인 제출서류</b>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b>담당공무원 확인사항</b>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b>참고사항</b>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조제분유 지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당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 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초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다.

1. 셋째 자녀: 100만원으로 하며

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2. 넷째 자녀: 2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3.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으

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2년

간 지급

② 제3조제2항의 경우 2년째 지

급은 지원대상이 된 달부터 1년

후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10조(지원금의 조정)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지급방법

은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의 조정) -----

-----

-----

-----

---- 지원대상-----

-----.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부터 연중
- 사업대상: 관내에 출생신고 한 둘째이상 출생아
- 사업내용: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시 축하금 지원

## 2. 비용 발생 요인: 달서구에 출생신고 한 둘째 자녀 출산축하금

##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지원기준)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5년부터 추진할 사업(5년)에 대한 비용 추계

- 둘째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둘째 출생아수	1,103명	840명	805명	697명

※ 2025년도 600명 기준유지

<자료원: 행정안전부>

나. 추계결과: 1,500백만원(300백만원×5년)

다. 재원조달방안: 구비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세출						
출산축하금	1,500	300	300	300	300	300
재원조달						
구비	1,500	300	300	300	300	300

## 6.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 【관계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다. 생략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차. 생략
  - 3.~6. 생략
-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3.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